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제220085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안 제62조)	2

I.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제220085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생략)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 ⑲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⑳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및 절차와 시정·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 제62조제18항¹⁾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 주체를 ‘발주청’²⁾에서 ‘인·허가기관의 장’³⁾으로 확대하고, 설계의 안전성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

검토 대상인 건설공사의 범위를 현행법 제62조제1항4)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명시하려는 것임.

먼저, 설계 안전성 검토란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 및 저감하여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 공법과 절차, 시공 시 위험요소 및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도에는 562건이 검토되었고, 2023년도에는 2019년 대비 약 5.2배 증가한 2,928건이 검토되었음.

< 연도별 설계 안전성 검토 건수 >

연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검토 건수	11건	191건	562건	1,632건	2,279건	2,845건	2,928건

※ 자료: 국토교통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 안전성 검토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18.12월 도입)	검토 내용	○ 시공 공법과 절차 ○ 시공시 위험요소·위험성 저감대책 ○ 위험요소 관리 체크리스트 ○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잠정위험요소·위험성 저감대책 ○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적정여부 등
검토 목적	설계단계에서 사전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설계 적정성 검토	검토 절차	1. 설계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2. 발주청 보고서 확인 및 검토의뢰 3. 국토안전관리원 보고서 검토의견 통보 4. 발주청 검토결과 심사 및 결과 통보 5-1. 설계자 부적정시 보고서 보완(1~4반복) 5-2. 발주청 승인 시 국토부 제출
검토 대상	공공의 주요 건설현장 (제1·2종시설물 건설 등)	검토 기간	발주청의 의뢰 이후 20일 이내 검토의견 통보
검토 단계	실시 설계단계	수수료	200만원 ~ 470만원

현행법 제62조제18항⁵⁾에서는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로 발주청(‘공공공사’를 의미함⁶⁾)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행법 체계에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공공공사’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임.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행법 제2조(정의규정)제6호에서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공공사를 의미함.

안 제62조제18항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 주체를 발주청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⁷⁾ 등 설계 부실 또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대형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한 부실시공 사례가 민간공사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공사에서도 공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상의 부실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국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한편, 안 제62조제18항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을 제62조제1항⁸⁾

7)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8)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특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62조제1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98조제1항⁹⁾에 따라 현재 공공공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민간공사의 범위를 공공공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에 대해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안전법 제62조제18항에 대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시행령 제75조의2¹⁰⁾에 따르면,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 주체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민간공사에서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 주체도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로 규정하는 것이 공공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음, 안 제62조제19항에서는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안 제62조제19항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제75조의2¹¹⁾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청’이 ‘설계업체’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만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데,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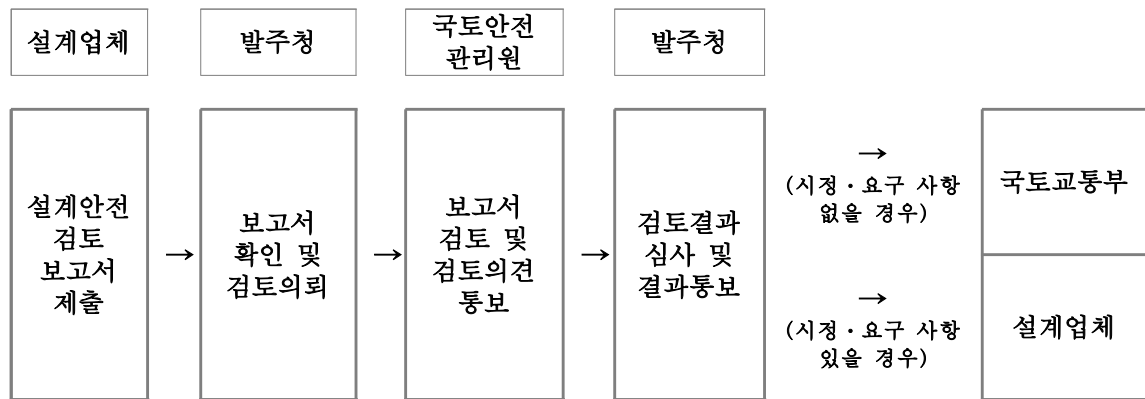
이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에 대한 전문성·체계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에 대한 직접 수행보다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안 제62조제19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요구하기보다는 공공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발주청’이 설계업체에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는 민간 ‘발주자’가 ‘설계업체’에게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의 체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아울러 안 제62조제1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체계에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임.

【 설계 안전성 검토 프로세스 요약 】



문 의 처

02)6788-5591